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| 보도자료 | 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6.11.24.(화) 석간 배포 2026.11.23.(월) 16:00

개정 특금법에 따른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결과 및 향후 심사절차 안내

✓ 개정 특금법에 따라 늘어난 신고사항에 대해, 기존 신고 사업자 28개 모두 기한(11.20.)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, 11.23.(월)부터 심사 착수

✓ 부칙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신고 유효기간(3년)은 연장되지 않으며, 갱신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도로 이행할 필요

✓ 부채비율·법령준수체계 요건은 시행 후 1년간 적용이 유예되나, 이번 부칙신고 심사과정에서 충족현황을 파악하고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계획

1. 부칙신고 접수결과

금융정보분석원(FIU, 원장: 이형주)과 **금융감독원**(원장: 이찬진)은 **11월 20일**(접수기한)**까지** 개정「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특금법") **부칙**에 따른 **신고**(이하 "부칙신고")를 접수한 결과, '26.8.20일 법 시행 당시 신고가 수리된 **가상자산사업자 28개 모두 기한 내**에 **부칙신고서**를 **제출**하였다고 밝혔다.

구분	원화마켓	코인마켓	지갑·보관업자 등	합계
신고대상	5	13	10	28
기한 내 제출	5	13	10	28

2. 부칙신고 개요

가상자산업권의 **건전성**과 **투명성**을 제고하기 위하여 **특금법**이 개정('26.8.20. 시행)됨에 따라, 가상자산사업자 **신고 심사대상**이 사업자 및 대표자·임원 외에 **대주주**까지 넓어지고, **재무상태·사회적 신용** 및 조직·인력·전산설비·내부통제체계 등 **법령준수체계**에 관한 **신고 불수리 요건**이 새롭게 마련되었다.

이번 부칙신고는 '26.8.20. 법 **시행 당시 이미 신고**가 **수리**되어 있던 사업자도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**'26.11.2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**을 **신고**하여야 함에 따른 것이다.

이에, FIU와 금감원은 **신고매뉴얼**을 **개정**하고, 사업자 대상 **공개 설명회**('26.8.13.)를 개최하는 한편, 부칙신고 접수에 앞서 사업자들의 신고서류 구비 여부를 **사전 검토**(~'26.10월)하는 등 사업자의 **원활한 신고**를 **적극 지원**해 왔다.

3. 주요 심사항목

부칙신고는 개정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요건을 **기존 사업자에게도 적용**하기 위한 절차이다. 이에 따라, 이번 심사에서 **개정법으로 추가된 사항**을 중심으로 **기존 사업자의 현황**을 확인하고, **강화된 요건**에 대한 **이행 준비상황**을 **점검**할 예정이다.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대주주가 불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**처음**인 만큼 **대주주 현황**을 **정확히 파악**할 계획이다. 사업자는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**대주주 등***을 **실질에 맞게 누락 없이 신고**하여야 한다. 대주주 등의 **법률 위반전력** 및 **사회적 신용**에 관한 사항도 그 **발생시점과 관계없이 빠짐없이 신고**하여야 하며, 이 중 **법 시행 전 발생 사유**에 대해서는 **개정법 부칙**의 **경과조치**(4.다. 후술)에 따라 **종전 규정**이 적용될 예정이다.

* 최대주주, 지분 10% 이상 주요 주주,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,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

둘째, **유예대상 요건**의 **충족현황**과 **이행계획**을 점검할 계획이다. 사업자의 **부채비율**(200% 이하) 및 **법령준수체계 요건***은 개정법 시행 후 **1년간 유예기간**이 **적용**되므로 현재 해당요건을 **충족하지 못하더라도** 이번 심사의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, 사업자별 **현재 충족수준**과 **유예기간 내 충족 가능성**을 **점검**할 필요가 있다. 이를 위해 **재무제표**로 **부채비율** 수준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**현장확인** 등을 통해 **법령준수체계**인 자금세탁방지 **인력** 및 **전산설비 구비 현황**과 **내부통제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**까지 살펴볼 예정이다.

*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 4명 이상 확보, 자격을 갖춘 준법감시인 및 전산요원 확보, 고유식별정보·개인신용정보 처리시 국내에 전산설비를 두고 충분한 사용권한을 갖출 것 등

4. 유의사항

이번 부칙신고는 **개정법 시행**에 따라 **한 차례 실시**되는 **경과적 절차**로서, **통상의 신고**인 갱신신고·변경신고와는 그 **효력**과 **적용기준**을 달리한다. 따라서 사업자와 시장 참여자는 부칙신고의 **결과**와 **의미**에 대해 **유의할 필요**가 있다.

가. 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신고와의 관계

부칙신고가 수리되더라도 **신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.**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수리일부터 3년이며, **개정법 부칙 제3조**는 유효기간 산정시 **수리일**을 **종전 신고의 수리일로 보도록 규정**하고 있다. 이는 부칙신고가 강화된 요건을 기존 사업자에게 **조기에 적용**하기 위한 절차로서, 신고의 **효력**을 **새로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**을 감안한 것이다. 부칙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다시 산정할 경우 **3년 주기의 갱신심사가 사실상 생략**되는 문제가 있다.

사업자는 부칙신고와 별개로,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하여야 한다. 특히, 유효기간 **만료**가 임박한 사업자는 **부칙신고 심사**가 **진행중**이더라도 **갱신신고 기한**을 **준수**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갱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**신고의 효력**이 **상실**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나. 변경신고와의 관계

부칙신고와 변경신고는 **별개의 절차**임에 유의해야 한다. 부칙신고는 **법 시행 당시**의 사업자가 **개정요건**에 따른 현황을 **1회 신고**하는 절차(부칙 제3조)인 반면, 변경신고는 신고한 사항이 **변경될 때마다 이행**해야 하는 절차(법 제7조제2항)이다.

따라서 부칙신고서를 제출한 이후, 대주주·임원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**부칙신고 심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변경신고**를 하여야 한다. 부칙신고 수리가 향후 변경신고 사항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, 변경신고의 수리가 부칙신고의 수리를 의미하지도 않는다. 이번 부칙신고 심사 과정에서 변경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두 신고를 **별개**로 **심사**하여 **각각 통지**할 예정이다.

다. 법 시행 전 발생사유에 대한 경과조치

법 시행('26.8.20일) **전에 발생한 사유**에 대해서는 신고심사시 **종전 규정**이 적용된다. 개정법은 법률 위반 전력 심사와 관련하여 **대상 법률**을 공정거래법,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확대하고 **심사 대상**에 **대주주**를 추가하였으며, **재무상태** 및 **사회적 신용** 요건을 **불수리 사유**로 신설하였다.

다만, 강화된 기준을 **이미 영업 중**인 사업자의 **과거 사실**에까지 **소급**하여 적용할 경우 사업자의 **영업기반**이 **급격히 훼손**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, 개정법 부칙은 **경과조치**를 두었다. 구체적으로, 법 시행 당시의 대표자·임원·대주주가 **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**로 **강화된 불수리 사유**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·임원·대주주가 **변경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**을 **적용**하며(부칙 제4조), **사업자 본인**의 경우에도 **종전 규정**을 적용한다(부칙 제5조).

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가 **법 시행 전**에 받은 **벌금형**이나 **채무불이행** 등은 이번 부칙신고의 **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**

다만, 경과조치는 **불수리·직권말소 여부**의 **판단기준**에 관한 것으로, **신고의무 자체**를 **면제**하는 것은 아니므로, 기존 사업자도 대주주 현황 등 **신고사항**을 **빠짐없이 신고**해야 하며, **거짓 작성** 또는 **중요사항 누락**시 그 자체로 **불수리 사유**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.

라. 부채비율 및 법령준수체계 요건의 적용 유예

사업자의 **부채비율**(200% 이하) 및 **법령준수체계 요건**은 **1년간 적용**이 **유예**된다. 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, 전문인력 채용, 전산설비 구축 등에 **상당한 기간**이 소요되고, 즉시 적용시 **다수 사업자**의 **영업종료**로 이어져 **이용자 피해**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. 이를 감안하여, **감독규정 부칙 제3조**는 법 시행 전에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요건에 따른 불수리·직권말소 기준을 개정 규정 **시행 후 1년**이 지난 **'27.8.20일부터 적용**하도록 하였다.

이에 따라, 기존 사업자가 현재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**부칙신고가 불수리되지는 않으며**, 유예기간 중에는 **직권말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**. 다만, 유예는 **요건 충족시한**을 **연장**한 것일뿐, 요건 자체를 **면제한 것은 아님**에 유의해야 한다. 유예기간 종료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**직권말소 대상**이 될 수 있다.

FIU와 금감원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**유예 대상 요건**의 **충족현황**을 **점검**하고, **미충족 사업자**에 대해서는 **개선계획**을 제출받아 **이행상황**을 **지속 점검**할 계획이다.

5. 향후 일정

FIU와 금감원은 **11.23일부터** 접수된 신고건의 심사를 **일제히 진행**할 예정이다. 사업자가 제출한 **신고서류**를 **검토**하여 **미비**하거나 **추가확인**이 필요한 경우 **서류 보완**을 **요청**하는 한편, **전산설비** 및 **내부통제체계** 마련 및 실제 작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**현장확인** 등을 통해 **면밀히 심사**해 나갈 계획이다.

다만, 심사는 **사업자별로 각각 진행**되므로 **최종 결과 통지시점**은 **사업자마다 다를 수** 있으며, 통지시점의 **선후**가 곧 사업자의 **적격 여부**나 **우열**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FIU는 "이번 부칙신고 심사가 **자금세탁 방지** 및 **가상자산업권의 건전성 제고**를 위해 마련된 **강화된 신고요건**이 **시장**에 **안착**하는 **첫 단계**"라며, "모든 사업자에 대해 **동일한 기준**에 따라 **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**하는 한편, 시장의 **불확실성**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**속도감 있게** 심사를 **진행**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	책임자	과 장	안남기 (02-2100-1711)
		담당자	사무관	김세화 (02-2100-1713)
			주무관	정문형 (02-2100-1718)
			주무관	김재덕 (02-2100-1717)
	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	책임자	국 장	최강석 (02-3145-8160)
		담당자	팀 장	신익재 (02-3145-8314)